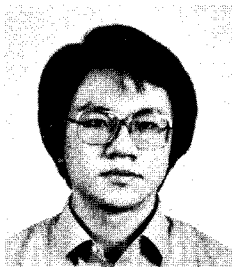


미국의 가공란 검사법(3)

최근 계란을 이용한 액란, 난분 등의 생산과 더불어 그 가공율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난가공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양계인들이 가공란에 대해 그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수출을 할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란 검사에 통과해야 하므로 그 나라의 검사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역자는 최근 일본에서 발행되는 「가금연구」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던 미공법(Public Law) 91-597의 “가공란 검사법”을 재번역하여 난가공업자를 비롯한 양계인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訳者註)



유익중
농유공 종합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제13조 (위반의 고발)

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방검사국으로 고발되기 이전에 소송수속이 취해진 자(者)에게는 농무장관이나 보건, 교육, 후생장관으로부터 위반용의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있어야하며 동시에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구두 혹은 문서로 표명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농무장관이나 보건, 교육, 후생장관이 적절한 문서경고를 통지 하여서 공공의 이익이 지켜지고 본법이 준수된다고 고려될 경우에는 본법이 언제나 상대방에 대하여 본법위반을 형사소추하는 것으로 요구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규칙과 관리)

농무장관은 본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나 모든 조항을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 혹은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또 본법 제5조(라)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의 관리와 집행에 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적용제외)

가). 농무장관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한 규칙이나 조건 혹은 수속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것은 본법의 해당조항에서 적용제외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1) 함유되어있는 용도제한란이 신선란에 대한 연방소비자규격에서 허용한 기준이하로 함유되어 있는 난을 판매하는 경우나 수송, 보유 또는 사용.

(2) 시설 및 작업방법이 농무장관이 정한 위생 기준에 적합하고 가공란처리에 따라 수령되거나 사용된 난(卵)중에 함유되어있는 용도제한란이 신선란에 대한 연방소비자규격에서 허용한 기준보다 작은 사업장에서의 가공란의 처리 혹은 당해사업장에서 처리된 가공란.

(3) 생산자가 자가생산한 난을 오로지 자가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가족, 손님, 종업원에게 양도할 경우 혹은 난의 수송, 보유 및 사용.

(4) 생산자가 자가생산한 난을 자가소비하는 소

비자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에서 또는 가족, 손님, 종업원에게 양도할 목적에서 가공란을 처리하는 경우 혹은 그 가공란.

(5) 신선란 포장업자가 자가시설을 오로지 자가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거나 가족, 손님, 종업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혹은 그 난의 수송, 보유 및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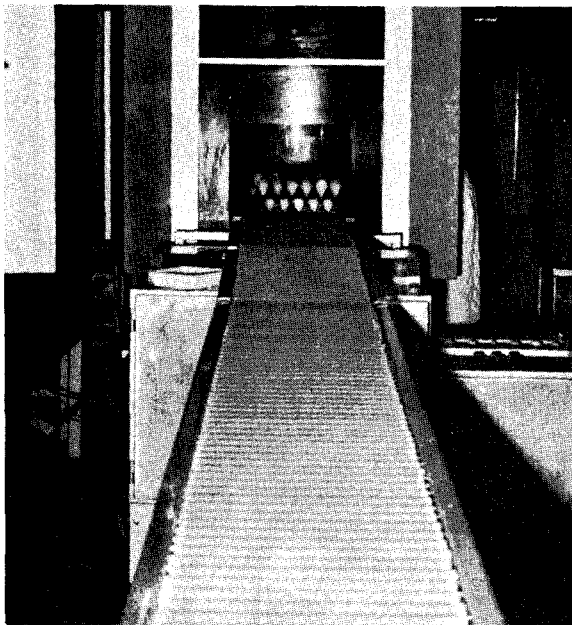
(6) 농무장관이 검사시설이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업개시기의 어떤일정기간(2년을 넘지 않음) 동안에 수행되는 가공란의 처리 및 그 가공란.

(7) 3천수이하 생산자의 난판매.

나). 농무장관은 만약 적용제외의 조건이나 공포규칙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떠한 때 어떠한 자에 대해서라도 본법(가)의2 혹은 (나)의 적용제외를 즉시 정지 또는 종료시켜야 한다. 농무장관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적용제외규정을 폐지할 수 있다.

제16조 (공인사업장으로의 자재반입의 제한)

농무장관은 난이나 가공란 및 기타자재가 공인사업장으로 반입될 경우, 그것이 본법의 목적에 확실히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모든 조항에 의해서 그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수입제한)

가). 식품으로서 이용가능한 용도제한란은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합중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 식품으로서 이용이 가능한 가공란은 수출국의 정부나 관계당국의 인가를 받은 연속적 검사방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아니면, 더우기 본법 혹은 본법에 의거하여 공포된 것으로 합중국내부에서 가공란에 적용되는 규칙에 표시된 기준에 합치되거나 혹은 기준에 따라 표시, 포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수입품은 모두 합중국내에 반입되면 본법의 모든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국산품으로 간주되어 취급되어야 한다. 단 규칙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요구하는 종류로 표시가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 국외에서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서나 가족, 손님, 종업원의 소비를 위해서 구입한 난이나 가공란에 대해 본조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농무장관은 본법에 위배되어 수입된 모든 물품의 파기에 관한 모든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단 당해물품이 농무장관이 설정한 기간내에 수탁자에 의해서 수출된 경우나 표시가 위반된 경우, 농무장관의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표시가 개선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본조에 위배되어 수입된 물품의 저장비나 하차운임, 노임 등의 모든 경비는 물품소유자는 물론, 수탁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물품이나 소유자로부터 수탁자가 본법에 따라 인수하여 수입한 물품을 차압한다.

라). 본조에 위배된 물품의 수입은 금지한다.

제18조 (검사업무제공의 거부)

농무장관은(본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간이나 무기한에)검사업무신청자나 수납자 또는 여기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1)이물이 혼입된 것, 위법표시된 것, 기만적으로 포장된 식품을 취득, 취급하거나 배분한 일로

하여 혹은 식품취급에 있어서 기만적인 행위를 한 이유로 하여 중죄나 한번이상의 경범죄를 범하여 연방 및 주(州)재판소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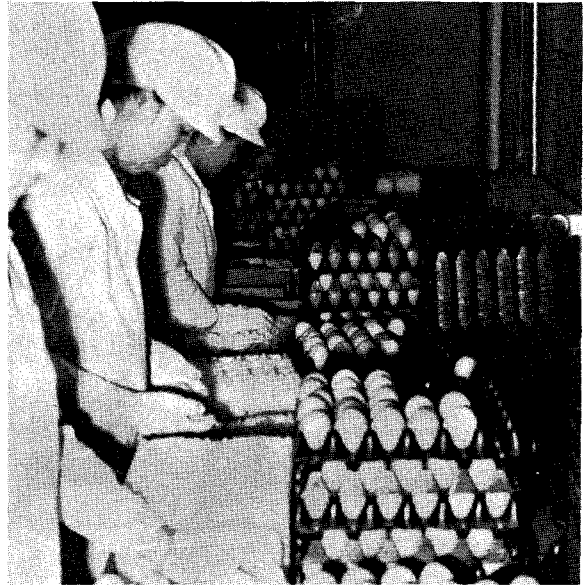
(2)사기나 증회(贈賄), 부당이득을 포함한 중죄나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나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등,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와 같은 검사업무신청자나 수납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본법하에 검사를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법하에 검사업무의 제휴(提携)를 거부하거나 인양(引揚)할 수 있다. 본법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협업출자자나 역원, 관리자 혹은 10%이상의 주식소유자나 관리 또는 집행권한이 부여된 종업원 등을 당해 사업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로 간주한다.

본조하에서 이것과 관련한 농무장관의 판정과 명령은 효력이 발생하기 30일내에 관련 검사 업무신청자나 수납자가 그의 주요사업소가 소재한 순회재판구의 연방소송재판소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연방공소재판소에 재심청구를 제출하지 않는한 최종적인 동시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

그와 같은 농무장관의 명령에 대한 재심은 농무장관의 판정과 명령에 의거한 증거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식육처리사매업자 및 가축취급소법(1921년)」제204조의 규정이 본조의 공소에 적용된다. 본조는 검사업무제공의 거부에 관한 것으로 본법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제19조 (행정의 유치)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 본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난이나 가공란이 농무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대리인에 의해 발견되고, 그것이 본법에 위반되어 처리, 구입, 판매, 소지, 소송 또는 판매나 수송을 목적으로하여 제공되거나 수령되는 경우, 혹은 그렇게 되기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나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본법에 위반되는 그 어떠한 경우에 대하여도, 또한 식품으로 이용가능한 용도제한란이 농무장관이 공



농무장관은 난이나 가공란 및 기타 자재가 공인사업장으로 반입될 경우, 그것이 본법의 목적에 확실히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모든 조항에 의해서 그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포한 규칙에서 그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의해 소지되어 있는 것을 위의 대리인이 발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결정, 혹은 이와 같은 물품에 관하여는 관할 연방주나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고지가 있은후 20일내에 적당한 기간에 위의 대리인은 당해 물품을 유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유치되고 나면 상기 대리인에 의하여 해제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물품을 유치장소로부터 이동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식 검인을 그대로 부착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이 만족하다고 판단하지 않는한 상기 대리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사범의 차압 수속)

가)본법에 위반하여 처리, 구입, 판매, 소지, 이용, 수송 또는 판매나 수송을 목적으로 하여 제공되거나 수령, 혹은 기타의 의미에서 본법을 위반

한 난 및 가공란은 또한 식품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서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의해 소지되어 있는 용도제한란은 모두, 언제라도 연방재판소나 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물품이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기타 재판소의 명령에 의해서 고소, 차압, 폐기처분될 수 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폐기처분의 명령이 있는 후에는 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폐기되거나 매각의 형태로 처분되어야 한다.

만약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수입액으로부터 재판소의 비용, 저장 기타의 비용으로 차압된 금액은 국고에 납부되어야 한다.

단, 매각은 본법이나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또는 공정포장이나 표시법 혹은 매각이 실시되는 구역의 모든 법규에 위반하여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단, 당해물품은 본법의 모든 조항이나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및 공정포장 표시법 혹은 처분이 실시되는 구역의 모든 법규에 위반하여

판매되거나 처분될 수 없으며, 또한 당해 재판소는 조건에 관해서 작성한 서약서의 제출을 얻어 상기 대리인이 적용법규를 준수시키기 위해서 취한 감독하에 소유자의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

폐기처분의 명령에 있어서, 당해물품이 제출한 서약서대로 해제되어 있거나 파기된 경우에는 재판소 비용 및 저장, 기타의 비용은 만약 당해 물품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수속은 대개 해사청구(海事請求)를 위한 보조 규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단 당사자에 관한 어떠한 것이라도 한번 합의를 본것에 대해서는 더우기 배심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여, 모든 수속은 합중국의 소송법과 동시에 합중국의 명(名)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나) 본법의 모든 규정은 본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서 부여된 폐기처분이나 차압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우위성을 갖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계속)

금년에도 파리, 바퀴 박멸엔 쿠펙스입니다.

퍼메스린제제

쿠펙스

같은 퍼메스린제제라도 이성질체의 비율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쿠펙스는 시스(cis) 25%와 트랜스(Trans) 75%로된 퍼메스린과 특수부형제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효과, 지속성, 안전성이 탁월합니다.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 8 3423/4